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
YOUR SAFETY IS OUR STANDARD

부정축산물

신고하고 포상금 받는 법

이런 사람을 보면 신고하세요!



1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·처리하는 사람

최고 300만원

- ☑ 시장에서 바로 도축하여 판매하는 식육
- ☑ 야산, 비닐하우스 뒤편 등 외진 곳에서 몰래 도축하는 현장

※ 대상축종: 소, 말, 양(염소), 돼지, 닭, 오리(소 5두 이상 시 최대 500만원)



2 소비기한을 위조·변조하여 처리·가공·포장·보관·운반 또는 진열한 사람

최고 50만원

- ☑ 소비기한을 변조하여 자체 표시사항 스티커를 붙인 축산물
- ☑ 마트 또는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의 소비기한 라벨을 교체하였거나 덧붙인 흔적 발견



3 관할 관청 허가·신고 없이 축산물 영업하는 사람

최고 30만원

- ☑ 오일장 및 시장에서 허가·신고없이 판매하는 축산물(닭, 달걀 등)
 - 간판이 없거나 영업허가·신고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
- ☑ 인터넷에서 허가·신고없이 판매하는 축산물
 - 판매업체의 영업허가·신고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

※ '내손안' 어플로 영업허가·신고사항 확인 가능

그 밖의 자세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

① 식약처 및 법제처 홈페이지 ▶ ② 법령정보 ▶ ③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요령(고시)를 확인하세요!

확인하기

식품의약품안전처

이렇게 신고하세요!

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신청 방법

- 부정축산물 **현장 사진·위치정보**를 **적발 주소의 시·도** 또는 **시·군·구 국민신문고** 또는 **통합상담민원**으로 신고
- 지자체에서 현장 확인 후 **고발 조치**
- 검찰 처분이 확정되면 **신고포상금 지급**



국민신문고 신고 방법

국민신문고 홈페이지 ⇒ 민원 ⇒ 일반민원 ⇒ 부정축산물 적발 주소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로 **적발 사진과 위치 정보를 첨부하여 신고**

국민신문고 일반민원 바로가기

식품안전나라 신고 방법

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⇒ 소비자신고 ⇒ 부정축산물 적발 주소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로 **적발 사진과 위치 정보 첨부하여 신고**

식품안전나라 소비자신고 바로가기

전화 신고 방법



부정·불량식품 신고는 **국번없이 1399**

기타 안내사항

② **소비기한 위·변조**와 ③ **허가·신고 없이 축산물 영업을 한 자**를 신고한 **포상금 이 둘을 합한 연간 1인당 포상금 지급한도는 100만원**입니다

※ 포상금 예산이 소진되거나, 지급한도 초과 대상자에는 포상금 미지급

식품의약품안전처